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1153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바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2. 9.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C에게 2017. 9. 29. 1,000만 원을 만기일 2020. 9. 29.,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출하였고, 2018. 6. 7. 310만 원을 만기일 2021. 6. 7.,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는 2019. 12. 27.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2.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0차전1048호로 위 나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4,837,415원 및 그 중 9,954,166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20. 6. 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와 자녀들인 C, F, G이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3. 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H은행에 대한 6,196,000원의 채무, D에 대한 12,263,526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가 함께 생활하여 번 수입으로 2003. 2. 21.에 취득한 재산으로 당시 C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고, 위 취득한 날부터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도 피고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3.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망인과 피고는 위 취득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모자관계에 있고, C은 D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을 당시를 포함한 2013.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 피고와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재남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창고

1층 농가창고 100.32㎡, 2층 단독주택 98.1㎡ 끝.

